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審查報告書

1994. 3. 16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3月 3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 : 1994年 3月 4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 : 第23回 永登浦區議會(臨時會)第1次 委員會(1994年 3月 16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)

가. 提案理由

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, 1993. 12. 27)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

나. 主要骨子

-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 위임
 -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: 의회내 전보권,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
 - 기능직공무원 : 신규임용(시보임용·해제포함), 의원면직
 - 소속공무원 승급
-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 위임
 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
 - 소속공무원 승급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姜性熙)

'93. 12. 27 地方公務員法의 一部 改正에 따라 他 執行機關과의 衡平 維持와 行政의 業務遂行 效率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1994. 2. 25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同 條例 改正準則(案)에 따라 다음과 같이 任用權者の 權限의 一部를 委任하고자 하는 内容이므로 要請案대로 改正함을 要한다고 思料됨.

4. 審查結果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3. 3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 개정(법률 제4613호, 1993. 12. 27)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위임
 -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: 의회내 전보권,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
 - 기능직공무원 : 신규임용(시보임용해제포함), 의원면직
 - 소속공무원 승급
-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일부 권한위임
 -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
 - 소속공무원의 승급

3. 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, 제63조, 제65조, 제27조, 제60조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7 조, 제26조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6 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참고사항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 제 1 항중 “보건소장” 다음에 “및 구의회사무국장”을 추가한다.

〈별표〉 위임사무중 “제 3 호” 다음에 “제3-1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무명	근거법령	위임종류	수임기관
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.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(시보임용해제 포함) 의원면직	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제63조, 제65조, 제27 조, 제60조 •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7 조 제26조	위임	구의회 사무국장
나.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	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•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7 조 제26조	위임	보건소장
다. 소속공무원의 승급	•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6조	위임	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제 5 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 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				제 5 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 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 표와 같다.			
〈별표〉				〈별표〉			
사 무 명	근거법령	위임 종류	수임기관	사 무 명	근거법령	위임 종류	수임기관
〈신설〉				3-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.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 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· 휴직 및 휴직 예 따른 복직, 기능직 공무원 의 신규임용 (시보임용해 제포함).의원 면직 나.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 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	• 지방공무 원법 제30 조의 5 · 제63조 · 제65조 · 제27조 · 제60조 •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 7 조 · 제26조 • 지방공무 원법 제30 조의5 •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 7 조 · 제26조 • 지방공무 원보수규 정제 6 조	위임 위임 위임	구 회 의 사무국 장 보건소 장 구 의 회 사무국 장 보건소 장